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 변화하는 전자·IT산업 및 우리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야별로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주)

과학기술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실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상반기에 발효됨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가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여성과학자 수를 2005년까지 전체 연구인력의 15%로, 2010년까지 20%로 늘려야 한다.

국비과학기술연수지원 확대

해외 국비과학기술연수(해외 Post-doc) 지원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되고 지원대상 인원도 최대 400명까지 늘어난다. 지원경비도 체제비를 증액하고 간접연구비를 신규지원하는 등 현실화된다.

금융

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근로자와 서민용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금리를 연 7~7.5%에서 6.5%로 내린다. 이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안 쓴 신용카드 말소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사들의 약관개정에 따라 현재 2,100만장에 달하는 1년 이상 휴면 신용카드가 해당 회원에게 통보만 하면 말소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연체자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불량회원들도 대대적으로 퇴출시킬 예정이다.

신용정보 공유 확대

은행연합회에서 500만원 미만의 개인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를 수집, 금융기관이 공유하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무역산업

종합상사 지정기준 완화

전년도 수출통관액이 한국 전체 수출통관액의 2% 이상인 상장법인, 해외 현지법인이나 영업소가 20개 이상이고 100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30개국 이상인 상장법인이면 종합상사로 지정될 수 있다.

관세양허용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각 시·도에서 대한 상공회의소나 세관으로 바뀌었다.

전기요금 조정

주택용 전기요금은 2.2% 인하해 요금 부담을 경감 하고 일반용도 2.0% 낮췄다. 이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2.5% 인상 했다.

전력 직접구매제도 실시

수전설비용량 5만KVA 이상 대규모 전기 수용가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송 부문

자산규모 3조원 이상 기업 소유제한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승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방송구역 이외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동시 재송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위성방송사업자도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할 수 있게 된다.

종합유선방송 채널구성 가이드라인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특정채널 과다편성 문제 개선 및 채널구성의 다양성 구현

을 통한 수신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 '종합유선방송 채널구성 가이드라인'을 제정,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방송소외계층 방송 지원

방송위원회는 내년도에 총 15억5000만원을 투자해 시청자단체 활동지원과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지원한다.

보험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는 8.5%, 건강보험 수가는 3% 인상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진료 건당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10~30% 경감받게 된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7월부터 소득액의 6%에서 7%로 인상된다.

산재보험 대상 확대

근로자 5인 미만의 농림어업과 수렵업 법인, 그리고 시공금액 2,000만원 미만의 영세 건설업체 종사자들도 1분기 안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이같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착수함에 따라 사실상 가족단위로 영업하는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부동산

외국인산업연수생 권익보호 강화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 혜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국비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30%에서 50%까지 늘린다.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5년 범위 내 계약갱신 요구권을 갖는다.

또 상가임대료 인상한도가 연 12%로 제한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할 때 산정률도 15% 이내로 제한된다.

산업 · 과학 부문

신뢰성보험제도 시행

신뢰성보험공사는 내년 3월부터 부품·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쳐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을 실시한다. 이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부품·소재의 고장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수입환변동 보험제도 시행

수출보험공사는 내년 3월부터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거래를 보험대상으로 하는 수입환변동 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중소 수출기업은 저렴한 보험료만 내면 완성품 수출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등 모든 대외거래에서 발생하

는 환위험을 일정 정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납세편의 제고

내년부터 법인이 체납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체납세금의 납부 및 과산절차진행이 곤란할 경우 파산법원의 요청을 받아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세제지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다국적 기업본부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이 인하된다. 해외근무수당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정급여액의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연봉제의 경우 자녀교육비와 주거비지출액을 월정급여액의 40%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무역상사의 지정기준 완화

내년부터 해외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상이고 동시에 100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이 30개국 이상인 상장법인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확인요건 개편

벤처기업의 확인요건이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별로 각각 개편돼 시행된다. 벤처투자기업은 벤처캐피털 주식 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그 비율의 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업이며, 연구개발기업은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이다.

신기술기업은 특허,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술, 이전 받은 기술,

정부출연 연구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하게 평가받은 기업이다.

생활·유통 부문

중고내구재 6개월간 제품하자 보증

중고 TV·냉장고·세탁기의 경우 중고가전제품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성능보장을 약속한 기간 내에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 성능보증 관련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6개월간 보증한다. 중고자동차도 약속 기간 내에서 무상수리해야 한다.

건축허가전 상가의 층별 매장 표시 광고 금지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돼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표시 없이 분양 상가 층별 매장의 업종을 표시해 광고하거나, 계약시 층별 매장을 설명한 평면도, 조감도 카탈로그, 전단 등을 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난 신용카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 강화

분실·도난 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중전 25일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전액보상.

다단계로 구입한 상품, 14일 이내 철회 가능

방문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했다가 청약 철회하고자 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14일 이내면 가능하다. 또 전자상거래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내 18개 재래시장의 상품을 인터넷과 전화로 공동주문 받아 즉각 배달하는 통합콜센터가 운영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율이 20%였던 직불카드의 공제율이 30%로 확대된다. 또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도서정가제 시행

1월부터 신간서적에 대해 10% 이상 할인을 금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책은 정가제에서 제외된다.

금융 세무

근로자 소득공제액 확대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 때 근로자 특별공제한도가 유치원생 교육비 100만→150만원, 중고생 교육비 150만→200만원, 대학생 교육비 300만→500만원, 의료비 300만→500만원, 보험료 70만→100만원, 장기주택자금이자상환액 300만→60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루 6만원이었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도 8만원으로 늘어난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건강진단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함

지로로 납부한 사설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율이 20%였던 직



불카드의 공제율이 30%로 늘어났다.

법칙금 등 세금고지서 E메일로 고지

국세나 관세·법칙금 등 각종 국고금의 납입 고지서를 E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홈뱅킹을 이용,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일용근로자 세부담 경감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현행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해 세부담이 낮춰진다.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도 경감돼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월 정액급여의 40%로 상향조정되고, 연봉제 근로자는 자녀교육비와 주거비 지출액을 월 정액급여의 40%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소비자 보호

중고품 품질보증제도 강화

시행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중고 텔레비전과 냉장고, 세탁기가 품질보증 기간 내에 고장이 날 경우 무상으로 수리받거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서 기준으로 6개월간 제품 하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중고골프채도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체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새차를 살 때처럼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돼 일정기간 수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도난 피해보상 기간 확대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제3자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이 현행 25일 전에서 60일 전까지로 크게 늘어났다.

케이블TV 수신 불량시 수신료 안 낸다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이나 중계유선방송(난시청지역 공중파중계)을 수신하기로 한 뒤 월 7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수신상태에 이상이 있으면 그달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계약을 하거나 해약한 달의 수신료는 실제로 본 날 만큼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카파라치 보상금 중단

교통법규위반신고자(일명 카파라치)에게 건당 2,000원을 지급하던 보상금 지급이 새해부터 중단된다.

그러나 규정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 9만원(무인카메라 단속시 10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산후조리원 계약해제시 소비자 손해 경감

산후조리원에 입원할 때 소비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입원예정일 기준으로 10~20일 전은 계약금의 30%, 입원예정일 21~30일 전은 계약금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여성문제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이로써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여성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정책책임관제도

중앙행정기관은 최소 3급이상 공무원으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명하고, 관련 여성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게 해야 한다. 3월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관급 이상으로 하자는 주문을 하고 있기도 하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

여성기술인력이나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개발센터에서 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원하면 이들에게 창업자금을 융자한다. 여성발전기금 100 억원이 확보돼 있다.

개발도상국 여성발전지원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회원 개발도상국의 여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시범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다.

20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2,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통사고 손해배당 대상 확대

교통사고 때 노트북이나 휴대전화기, 골프채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되고,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신체사고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기능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범위가 확대돼 홀·짝수 변경과 번호판 분실과 도난의 경우에도 바꿀 수 있다.

또 자동차 신규등록시에도 무작위로 추출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현재 방식 대신 2개의 번호를 추출, 그중 자동차 소유자가 하나의 번호를 고를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승용차 연료비 지원 증액

LPG 세금 인상 지원액을 1ℓ에 140원에서 210원으로 7월부터 조정된다.

속도위반 단속강화

규정속도에서 40km를 초과해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점 30점 외에 별도의 범칙금(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이 부과된다.

20~40km 이하 속도초과 기준(승용차)도 새로 정해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20km 이하 속도초과 차량은 현행대로 벌점은 없는 대신 범칙금 3만원이 적용된다.

운전면허교육 강화

7월부터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수험생이 기능 시험을 보기 전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의무적

우정서비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1100원인 등기취급수수료가 1300원으로 조정돼 등기우편물 1통(25g 기준)을 보내려면 우편요금 190원을 포함하여 1490원이 소요된다. 단, 통상(서장), 소포 등 기타 우편요금은 현행과 동일하다.

자동차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 상향조정

지난해까지 자동차사고 사망시 20세 이상~60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위자료가 3,2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4,500만원으로 오른다.



으로 받도록 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한다.

정보가전

중고가전 6개월간 무상수리

품질보장 약속을 받지 않고 중고 가전제품을 구입해도 6개월간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중고 TV·냉장고·세탁기·자동차의 경우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을 약속한 기간 중에는 판매업자가 무상수리를 해주거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가전제품은 품질 보상 약속에 관계없이 판매업자가 6개월 안에 생긴 하자를 책임져야 한다.

가전제품 생산자가 책임 재활용

텔레비전과·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생산자(제조회사)가 책임지고 재활용해야 한다.

컵라면 용기나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 제품과 포장재도 내년부터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재활용 공장이나 기술 등이 부족해 회수·재활용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형광등과 과자봉지 등 필름류는 2004년부터, 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는 2005년부터 생산자 책임 아래 재활용된다.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달성하지 못한 양에 대해 회수 및 재활용 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115~130%까지 부과금을 물게 된다.

정보통신 부문

스팸메일 규제 강화

1월부터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6월부터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된다.

이동전화요금 인하

1월부터 SK텔레콤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가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평균 7.3% 내린다. 무료통화도 매달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 제공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

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상반기에 청주·안산·김해·순천 등 4개 지역, 하반기에 성남·수원·안양·고양·구리·김포·의정부·대전·광주·울산·전주·천안·마산 등 13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된다.

디지털TV 방송 광역시로 확대

하반기부터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7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된다.

무선국 검사수수료 인하

4월부터 무선국 재검사 수수료가 67% 가량 내린다. 또 다중 무선설비의 준공검사 수수료도 종전 18만6000원에서 14만원, 정기검사 수수료는 14만1000원에서 10만3000원, 변경·임시검사 수수료는 13만9000원에서 10만3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정통부 원클릭 민원서비스 개시

3월부터 통신서비스 피해신고 등 40여종의 정보통신 민원을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로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 확인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실시된다. 하반기에는 서비스 대상이 180여종으로 확대된다.

주식

장외전자거래시장(ECN) 가격변동 허용

ECN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가격변동폭을 거래소 또는 협회 중가기준 일정범위 내로 확대하고 같은 가격으로 30분씩 단일가 매매하도록 한다.

상장법인 등 배당제도 의무화

상장법인 등의 현금배당시 시가배당률(주가대비 배당액)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액면배당을 공시는 금지한다.

코스닥시장에서 ETF 거래 허용

현재 증권거래소에만 허용된 수익 증권 형태의 등록지수펀드(ETF)를 협회중개시장에도 도

입해 주식투자 수단을 다양화한다.

코스닥기업 사외이사 선임대상 확대

현재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코스닥기업 사외이사 선임대상기업 범위를 500억원 이상 법인으로 강화한다.

부도기업이나 부도징후 기업 퇴출강화

현행 수표·어음 부도처리 또는 은행거래정지로 관리종목지정 후 1년 이내에 사유 미해소시 상장을 폐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사유발생 즉시 상장폐지한다. 또 현행 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신청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개시신청기각, 개시결정취소, 정리절차 폐지 등의 경우에 상장을 폐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한다.

코스닥 최소 주가 기준 상향 조정

내년 7월 1일부터 액면가 30%(기존 20%) 미만으로 주가가 30일 연속하면 관리종목 지정. 그 이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미달하면 퇴출한다.